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4. 11. 7 선고 2024가단135049 판결 [대여금 및 보증채무금]

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고1. 주식회사 C

2. D

변론 종결2024. 10. 17.

판결 선고2024. 11. 7.

주 문

1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,913,310원 및 그 중 147,425,592원에 대하여 2024. 5. 23.부터 2024. 6. 22.까지 연 11.2%의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(단, '채권자'는 원고로, '채무자'는 피고로 본다).

2. 적용법조

자백간주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, 제1항)

판사김성준

별지